의안번호		제774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774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3 제2항에 따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 한전 '24년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최종 선정('24.10.28., 11.12.)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1. ~ '25. 2. ※ 사업비 : 한전 전액부담

○ 설치장소 : 청사 민원인 주차장 내 3면

○ 사 업 량 : 급속충전기 3대 구축(100kW 1대, 50kW 2대)

○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 구축·설비 총괄 운영

○ 주요내용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

3. 추진상황 및 계획

○ '24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한전 → 도) : 8.16.

-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주변여건, 전력설비 등) : 8~9월

○ '24년 공용전기차 공모 수요조사 제출(도 → 한전) : 9.2.

○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안내(한전 → 도)
: 10.28., 11.12

○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방안 협의(도 ↔ 한전) : 10.31.

○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설계, 시공, 준공) : 11~'25.2월

- 설계 및 점용허가(11~12월), 시공(1~2월), 준공 및 서비스 시행(2월)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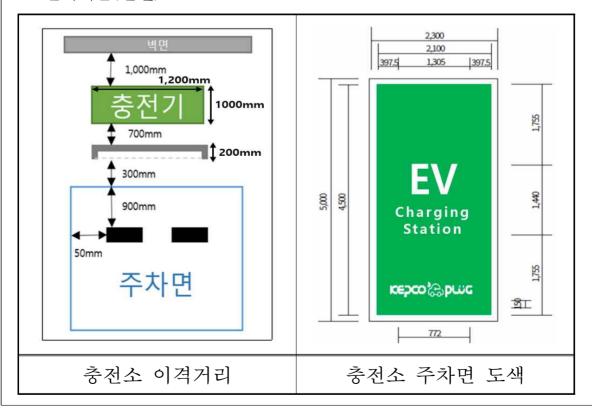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5. 기타

○ 충전기 설치예정지 현장사진(도청사)



○ 설치기준(한전)



붙임 관계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 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